

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 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  
전문위원 서 선 옥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37
- 나. 제 출 자: 강선영 의원 외 7명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2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## 2. 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 신청, 지정 기준,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~제5조)
- 다.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(안 제6조~제12조)
- 라.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함(안 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해당부서: 지역경제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1. 4. 5. ~ 4. 10.) 결과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“골목형 상점가”의 기준 및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
  -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으며,
  - 지정 시 구역의 특성, 상권의 규모,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
  -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<sup>1)</sup>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--

1) 그 소지자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 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.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

-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
  - 해당구역에서 (점포를 두고)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1이상의 동의
  -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
  - 해당구역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
  -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도록 함

※ 해당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에 필요한 수와 면적에서 제외됨.

-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으로
 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고,
  - 상인조직이 1개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하였으며,

**개별조항 검토 (안 제4조)**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서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“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” 고 규정하고 있으며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) 우리구 조례는 시행령의 기준에 따름.

-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조항으로
 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제4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 -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-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
  -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임기,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**개별조항 검토 (안 제6조)**

-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하며,
-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, 위촉직 위원은
  -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
  -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·사회단체 대표
  - 유통산업·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
  - 도시계획, 도시개발, 건축,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함.

- 안 제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음.
-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하였음.
  - 이에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,
  - 우리구에서도 해당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타구 조례 제정 현황 조사 등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음.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전통시장 중심의 획일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,
-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며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.

**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**□ 「유통산업발전법」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"상점가"란 일정 범위의 가로(街路)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·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.

**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**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**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**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